

의안 번호	1561	[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]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. 5. 30.(목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5. 30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9. 6. 17.(월)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및 「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에 따라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받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조성 총괄

(단위 : 원)

전년도말 조성액(가)	당해연도 증감액			당해연도말 조성액 (마)=(가)+(나)
	계(나)=(다)-(라)	조성액(다)	사용액(라)	
2,809,513,480	△2,780,429,040	2,719,570,960	5,500,000,000	29,084,440

4. 근거법규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
- 나. 「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

5. 검토의견 : 없음

근거법규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-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-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구청장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29.>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